

계약학과 운영 규정

2011. 5. 20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

2. 재교육형 계약학과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향상,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

제 3 조 (계약학과의 명칭, 정원 및 학위) ① 계약학과의 명칭, 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 별표 3과 같다.

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4 조 (입학자격 및 선발)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 14조 또는 제15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② 계약학과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 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·이수)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.

②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학기 및 수업일수)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.

제 7 조 (설치·운영 기간)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 기간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르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.

제 8 조 (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) ①계약학과 설치·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관련 학과(학부)에 소속시키며, 학업이수, 졸업요건, 등록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,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운영경비 및 부담)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제 10 조 (수업료 등 납부) ①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②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11 조 (학칙 등의 적용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(2011. 5. 20 제정)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